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5. 1. 21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5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: 2024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도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
○ 교육감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○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
○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○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안 이유 검토

-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음

<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>

구분	특수교육대상자 수 (명)		비고
	전국	충청북도	
2018년	90,780	4,022	
2020년	95,420	4,136	
2022년	103,695	4,492	
2023년	109,703	4,690	
2024년	115,610	4,956	

*출처: 연도별 특수교육통계(교육부)

- 일반학교는 교육공간의 부족 등 학교의 여건으로 인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, 특수학급이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, 도내에서도 특수학급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급이 부족하여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음

< 충청북도 특수학급 현황 >

(2024. 12. 2. 기준)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계
특수학급 학생수 (명)	293	1,371	643	473	2,780
특수학급 수 (개)	94	320	127	81	622
과밀학급 수 (개)	11	16	28	3	58

*출처: 충청북도교육청

- 특수학급은 여러 학년이 섞여 있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하지만 과밀학급의 특수교사는 학생 수 이상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, 결국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세심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됨
-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, 특수학급 신·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됨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
 - 본 조례는 도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
 -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을 따르고 있는 바 정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
- 안 제3조는 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장애 유형이나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 추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,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각급학교 장의 적극적인 협조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, 일반학교의 일반학급, 일반학교의 특수

학급,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,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각급학교 장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○ 안 제4조는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와 특수학급 설치·운영 현황, 특수교사 현황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

- 한편,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」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운영하고,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

- 이에 유사한 지원계획을 매년 중복 수립·시행하는 것보다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·운영시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○ 안 제5조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7조제1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규정, 제27조제2항은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,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

- 이에 일반학교의 교육공간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,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

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

- 그러나 완화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써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,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됨
- 또한,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을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
- 안 제6조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,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,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확충,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
 - 또한,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,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

다. 종합의견

-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,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과밀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

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

- 또한,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
- 다만,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,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